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울산광역시회

수　신　회원사
참　조
제　목　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·공포 안내

1.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하도급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반영 및 폭염·한파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사유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·공포(2026. 10. 27)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　1.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·공포 주요내용 1부.
　　2.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　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　울산광역시회
회　　장　　조　　현　　철

담당자　주임　박성민　　부장　이무열　　사무처장　정은숙
시　행　전건협 울산 제610호　(2026. 10. 28)
우 44726　울산 남구 삼산로 156 (달동, 전문건설회관 4층) / http://www.kosca26.or.kr
전화　052-256-8900　전송　052-256-8904　/ 전자우편　acemy72@kosca.or.kr